

[] 수탁처리능력 확인서
[] 폐기물 수탁확인서

※ 제3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(제1쪽)

(1) 위탁자	① 상호(명칭)			② 사업자등록번호					
	③ 성명(대표자)			④ 생년월일					
	⑤ 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							
	⑥ 위탁 폐기물								
	폐기물 종류 (분류번호)	성 질 · 상태	위탁량(톤/년)	폐기물 종류 (분류번호)	성 질 · 상태	위탁량(톤/년)			
	(- -)			(- -)					
	(- -)		(- -)						
(2) 수탁자	⑦ 상호(명칭)			⑧ 사업자등록번호					
	⑨ 성명(대표자)			⑩ 생년월일					
	⑪ 주소(사업장) (전화번호:)								
	⑫ 업종			⑬ 기술능력					
	⑭ 폐기물처리업 허가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관련 사항								
	허가(신고)번호		허가(신고)일(최종 변경일)		허가(신고수리)기관				
(3) 수탁 처리 능력 확인	⑮ 방치폐기물처리 이행보증		공제조합가입(), 보증보험가입()						
	수탁자의 허가 또는 신고 사항								
	⑯ 허가 또는 신고 업종	⑰ 영업대상 폐기물	⑱ 폐기물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	⑲ 폐기물 중간처분 또는 재활용 시설		⑳ 폐기물 최종처분시설		㉑ 수집 · 운반차량	
				종류	용량(톤/시간)	용량 (m³)	매립기간	규모(톤)	수량(대)
	㉒ 수탁자(최종처분업자 외의 자)의 처리능력(단위: 톤)								
	허용보관량		현재 폐기물 보관량	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	금회 폐기물 수탁(운반)량	전체 폐기물 보관량	1일 폐기물 처리 (운반)량		
	㉓ 수탁자(최종처분업자)의 처분능력(단위: m³)					㉔ 수탁 가능 여부			
	매립 허가용량		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	금회 폐기물 수탁량	남은 매립용량				

(4) 수탁 확인	㉕ 수탁폐기물의 종류별 처리방법				
	폐기물 종류 (분류번호)	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	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시설		수탁(예정)량 (톤/년)
			종 류	처분 또는 재활용 능력(톤/일)	

[]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의12제1호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 수탁자의 처리능력을 확인합니다.

[] 「폐기물관리법」 제17조제5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의2에 따라 위와 같이 폐기물의 수탁(예정)사실을 확인합니다.

년 월 일

위탁자(배출자): (업소명)

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수탁자(처리자): (업소명)

(대표자)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

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유역(지방)환경청장

수탁자 첨부서류	*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제출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 1.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 사본 2. 「폐기물관리법」 제40조제1항에 따른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(위탁자가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인 경우로 한정합니다)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*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제17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폐기물 수탁처리능력 확인서를 첨부하여 사업장폐기물배출자의 (변경)신고를 하거나 폐기물처리계획의 (변경)확인신청을 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. -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 증명서(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해당 서류를 확인할 수 없거나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합니다)	없음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신고인(신청인)

(서명 또는 인)

작성방법

<업소별>

1. 위탁자(배출자)는 ①란부터 ⑥란까지 적은 후 대표자나 폐기물관리책임자가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.
2. 수탁자(처리자)는 ⑦란부터 ⑬란까지 적고, 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는 ⑯란, ⑳란, ㉑란을, 폐기물 중간처리업자, 폐기물 재활용업자 및 폐기물처리 신고자는 ⑰란, ⑱란, ㉒란, ㉓란을, 폐기물 최종처리업자는 ㉔란, ㉕란, ㉖란, ㉗란을,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㉘란부터 ㉚란까지 모두 적은 후 대표자가 서명·날인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합니다.

<항목별>

1. 수탁처리능력 확인 시에는 해당 []에 표시를 하고 (1)란부터 (3)란까지를, 폐기물 수탁확인 시에는 해당 []에 표시를 하고 (1)란, (2)란 및 (4)란을 적되, 수탁처리능력 확인과 폐기물 수탁확인을 병행할 경우에는 모든 []에 각각 표시를 하고 (1)란부터 (4)란까지를 모두 적습니다.
2. ⑥란 중 폐기물 종류(분류번호)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, 성질·상태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고체상태이면 "1"로, 액체상태이면 "2"로, 지정폐기물을 함유한 용기(철제드럼, 폴리에틸렌용기 등)는 "기타"로 적으며, 위탁량(톤/년)란에는 연간 위탁처리하는 폐기물의 양을 톤 단위로 적습니다.
3. ㉙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에 따른 업종명을, ㉚란은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소분류에 따른 업종명을 적습니다.
4. ㉛란은 공제조합가입 또는 보증보험가입 중 해당하는 ()안에 "○" 표시하고, 그 이행보증금액을 적습니다.
5. ㉜란은 생활폐기물, 사업장비(非)배출시설계 폐기물,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, 건설폐기물, 의료폐기물 외의 지정폐기물 또는 의료폐기물로 구분하여 적되, 폐기물처리업 허가증에 적힌 영업대상폐기물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증명서에 적힌 재활용대상폐기물을 모두 적습니다.
6. ㉝란은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라 처리분류와 세분류 번호를 모두 적습니다.
7. ㉞란은 수집·운반업자의 경우에는 허가받은 수집운반차량을, 폐기물처리 신고자를 포함한 중간처리업자·재활용업자·최종처리업자의 경우에는 직접 운반하는 수집운반차량을 모두 적습니다.
8. ㉟란은 보관장소를 승인받은 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, 폐기물 중간처리업자, 폐기물 재활용업자,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적습니다.
- 가. 허용보관량: 폐기물의 종류별로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허용보관량을 기재
- 나. 현재 폐기물 보관량: 확인서 발급일 전일을 기준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량을 기재
- 다.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: 확인서 발급시점을 기준으로 계약된 전체 폐기물량을 최근 1년 동안의 가동 일수로 나눈 양을 기재
-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발급업체의 계약예정물량은 제외하며, 계약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계약된 물량만 산업가동일수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연간 예정 가동일수를 적용
- 1일 평균 반입량은 계약물량의 변경에 따라 함께 변경됨
- 라. 금회 폐기물 수탁(운반)량: 확인서 발급업체와 계약한 폐기물량의 1일 평균반입량을 기재
- 마. 전체 폐기물 보관량: (현재의 폐기물 보관량 + 1일 평균 폐기물 반입량 + 금회 폐기물 수탁량 - 1일 폐기물 처리량)에 따라 계산된 값을 기재
- 계산결과 (-)값이 되는 경우에도 그 값을 기재
- 바. 1일 폐기물 처리(운반)량: 해당업체가 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1일 폐기물 처리(운반)량을 기재
- 보관장소를 승인받지 못한 수집·운반업자의 경우에는 금회 폐기물수탁(운반)량 및 폐기물처리(운반)량을 기재
9. ㊱란은 폐기물 최종처리업자가 적고, 폐기물 종합처리업자는 ㊲란, ㊳란을 모두 적습니다.
10. ㊴란은 폐기물 수집·운반업자의 경우에는 수집·운반 가능 여부를, 폐기물 중간처리업자, 폐기물 재활용업자, 폐기물 종합처리업자,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경우에는 처분 또는 재활용 가능 여부를 적되, "가능 또는 불가능"으로 적습니다.
11. ㊵란 중 폐기물 종류(분류번호)란에는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 별표 4에 따른 사업장폐기물의 명칭과 분류번호를 적고, 처분 또는 재활용 방법란에는 아래 참고란의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에 따른 분류번호를 적으며, 폐기물 처분시설 또는 재활용 시설란에는 그 시설을 구체적으로 적고, 수탁(예정)량란에는 1년 동안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을 적으며, 수탁(예정)방법란에는 1회에 수탁받을 폐기물 예정량과 1년 동안 수탁받을 예정횟수를 적습니다.

<참고>: 폐기물처리 방법별 분류

처리구분	처 리 방 법	
	처리분류	세분류 번호
자가처리	재활용	원형 재사용[1001], 수리·수선 재사용[1002], 원료 제조[1003], 직접 제품제조[1004], 농업생산활동에 사용[1005], 토질개선에 사용[1006], 성토재·복토재 등으로 사용[1007], 직접 에너지회수[1008], 연료·고형연료제품 제조[1009], 중간가공폐기물 제조[1010],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[1011]
	중간처분	일반소각[1101], 고온소각[1102], 열분해[1103], 고온용융[1104], 압축[1105], 파쇄·분쇄[1106], 절단[1107], 용융[1108], 증발농축[1109], 유수분리[1110], 탈수·건조[1111], 멸균·분쇄[1112], 고형화[1113], 안정화[1114], 소멸화[1115], 중화[1116], 기타[1117]
	매립	관리형 매립시설[1201], 차단형 매립시설[1202], 기타 매립시설[1203]
	해역배출	[1300]
	수출	[1500]
위탁처리	재활용	원형 재사용[2001], 수리·수선 재사용[2002], 원료 제조[2003], 직접 제품제조[2004], 농업생산활동에 사용[2005], 토질개선에 사용[2006], 성토재·복토재 등으로 사용[2007], 직접 에너지회수[2008], 연료·고형연료제품 제조[2009], 중간가공폐기물 제조[2010], 재활용환경성평가 승인을 받은 유형으로 재활용[2011]
	중간처분	일반소각[2101], 고온소각[2102], 열분해[2103], 고온용융[2104], 압축[2105], 파쇄·분쇄[2106], 절단[2107], 용융[2108], 증발농축[2109], 유수분리[2110], 탈수·건조[2111], 멸균·분쇄[2112], 고형화[2113], 안정화[2114], 소멸화[2115], 중화[2116], 지방자치단체 소각[2117], 국가 소각[2118], 기타[2119]
	매립	민간관리형 매립시설[2201], 민간차단형 매립시설[2202], 기타 매립시설[2204],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[2205], 국가 매립시설[2206]
	해역배출	[2300]
폐기물의 성질과 상태		고체상태=1, 액체상태=2
폐기물 운반차량 종류		트럭/컨테이너=1, 탱크로리=2, 기타=3

비고: 국가 소각 및 국가 매립시설은 한국환경공단 또는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위탁받아 운영하는 시설을 말하고, 지방자치단체 매립시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운영하는 시설을 말합니다